



Gyeonggi Business & Science Accelerator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6. 4.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목 차

■ 운영지침	3-7
■ [별첨1] 분야별 세부사업	8-14
[1] 경영전략 분야 - 컨설팅	8
[2] 경영전략 분야 - 교육	9
[3] 제품 사업화 분야 - 제품 설계	10
[4] 제품 사업화 분야 - 디자인 개발	11
[5] 제품 사업화 분야 - 시제품제작	12
[6] 마케팅 분야 - 전시박람회	13
[7] 마케팅 분야 - 온라인마케팅	14
[8] 근무환경 개선 - 편의시설 구축	15
■ [별첨2] 신청제외 업종	16
■ 사업 관련 서식	17
[서식1] 참여 신청서	18
[서식1-1] 사업 추진계획서	19-21
[서식2] 지원금신청서	22
[서식2-1] 결과보고서	23-24
[서식3] 변경 승인 요청서	25
[서식4] 만족도 설문서	26
[서식5]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27
[평가서식1] 선정평가표	28
[평가서식2] 완료평가표	29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 1)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평택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 전반을 주관하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를 말한다.
- 2) “평가위원회”라 함은 과제의 도출 및 선정 등의 평가와 협약의 해약, 중단, 실패 과제 등의 안전을 심의하기 위해 5인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3)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4) “수행사”라 함은 참여기업 과제의 세부사업을 위탁받은 업체 혹은 기관 등을 말한다.
- 5) “과제책임자”라 함은 참여기업의 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나. 평가 관련 용어

- 1) “선정평가”라 함은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 등에 근거하여 신규 협력과제를 선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 2) “중간점검”이라 함은 참여기업의 과제 수행 중간단계에서 중간보고서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과제 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지원사업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
- 3) “완료점검”이라 함은 참여기업의 과제 수행 완료 후에 최종(완료)보고서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수행의 완료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업비 관련 용어

- 1) “사업비”라 함은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금과 참여기업 부담금(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2) “비목”이라 함은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견적서 또는 지원과제의 특성을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계상할 수 있다.
- 3) “기업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업 추진관련 안내사항

가. 기업선정 요건

- 1) 기본요건 :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한 여성 중소기업으로, 지방세납세 기업, 기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2) 여성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여성기업확인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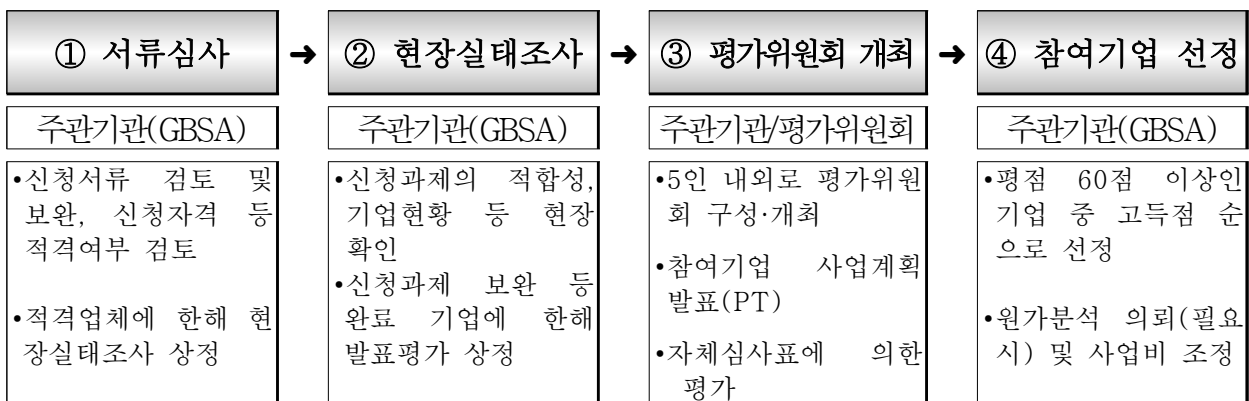
*** 전년도 동 사업 참여기업 참여제한**

나. 수행사

- 1) 세부사업 진행을 위한 수행사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선택함.
 - ※ 진흥원은 수행사를 지정하지 않으며 기업에게 추천을 할 수 없음.
 - ※ 수행사의 사업자등록증(업태, 종목)을 확인하며, 필요시 수행사와 관련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2) 완료 보고 시, 수행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별도 지출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함. (ex. 수행사에서 제3의 기관/업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한 경우)
 - ※ 단, 전시박람회 등 수행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다. 평가 및 선정

1) 사업추진절차



2) 평가위원회 종합평점 산정식

$$\text{과제심사 평가점수} = \frac{\text{평가위원의 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수} - 2}$$

라. 지원승인 및 지원금 지급

- 1) 공고일 또는 지원 승인 이전에 비용처리를 해야만 하는 경우(전시박람회 참가비

등)를 제외하고 지원결정 승인 이전에 착수한 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음.

2) 선정된 세부사업 전체 완료 후 일괄적으로 10일 이내 지원금 신청 및 결과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2월 31일을 완료 기준으로 둬.

3) 지원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계획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제없이 완료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 나) 당초 계획된 총 소요 예산을 지출 완료하여 증빙사항을 제출한 경우
- 다) 기타 지원금 지급 관련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출서류]

- 세부사업별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완료증빙(실물사진 / 원본파일 등)
- 세금계산서(수행사→수혜기업), 이체확인증(수혜기업→수행사), 수혜기업 계좌사본
- 지방세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만족도설문지 각 1부.

마. 과제 점검 실사

- 1) 선정평가 단계에서 실제 여성기업 여부, 기업현황 및 생산품 확인, 여성근로자수 확인 등을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함.
- 2) 진흥원 담당자가 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기간 중간점검 또는 완료 후 현장 실사/비대면 확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 및 수행사는 이에 협조해야 함.

바. 사업변경

- 1) 세부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기간, 과제내용, 수행사, 소요비용 증감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승인 변경요청을 해야 함. 제출서식 : [서식3]
- 2) 진흥원 담당자의 사업변경 승인 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과제를 변경할 수 없음. 위의 절차 없이 과제 수행 후 지원금 지급 신청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4. 세부사업 리스트

분 야	단위사업	세부사업
경영전략	컨설팅	경영/사업화/마케팅 관련 전문가 컨설팅
	교육 지원	경영/사업화/마케팅 관련 교육
제품 사업화	제품설계	기구설계 · 금형설계
	디자인 개발	제품 · 포장 · 시각디자인
	시제품 제작	목업 · 금형
마케팅	전시박람회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온라인마케팅	제품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B2B/B2C 계정 구입/갱신
	SNS · 온라인 마케팅	
근무환경 개선	편의시설 구축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구축(수유실, 휴게실 등)

※ 기업당 820만원 한도 내에서 복수의 세부사업 신청 가능

(지원금 산출 = 총 소요비용에서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최대 70%)

5. 선정 제외 및 지원 취소

가. 아래와 같은 기업은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1) 제출서류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특수관계자*등과 거래인 경우
- 2)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3) 당해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된 기업
- 4) 지원과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 담당자 승인 없이 진행한 기업
- 5) 평가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하여 보완요구사항에 대해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 6) 개발을 수행하였으나 개발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과제를 중단, 실패한 경우
- 7) 사유가 정당치 않은 세부사업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 8)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9)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 10)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부동산업 등 신청 제외 업종(※ 별첨의 표 참조)
- 11)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

< 특수관계자 >

1.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가. 8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
2. 경제적 연관관계
가. 사업화 지원 대상자 또는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임직원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나. 사업화 지원 대상자 또는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임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3. 그 외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나. 사업화대상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다.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라. 사업화대상자 자신과 100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자 있는 자
마.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6.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가.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수행사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 2)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3) 사업비의 과건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4)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 제출한 경우
 - 5)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가)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나)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별첨1

분야별 세부사업

[1] 경영전략 분야

I. 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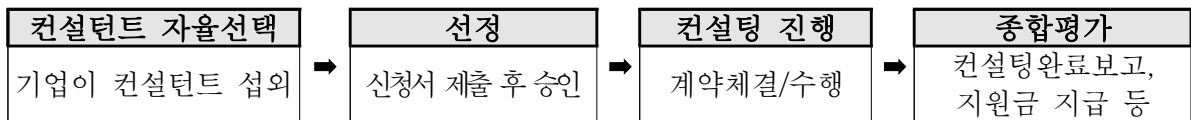
사업목적

- 기업의 성장단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 지속성장 견인

지원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사업화/마케팅 분야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지원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시 결과물 증빙

- 컨설턴트 자격증빙, 컨설턴트가 작성한 컨설팅 일지, 컨설팅 최종 결과보고서

컨설턴트 자격 및 수당 기준

등급	주요자격 및 경력	수입 단가
A	1.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 부교수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 민간기업의 이사급 이상으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20년 이상 일반실무경력자 6. 기타 일정경력을 갖춘 경영, 마케팅 및 기술전문가로서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300,000원/일
B	1.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 전임강사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미만 실무경력자 또는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미만 실무경력자 5. 민간기업 과장이상으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250,000원/일
C	1.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2. 대학 시간강사 이상 3. 민간기업의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200,000원/일

기대효과

- (성장발판마련) 중소기업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여 여성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연계를 통해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는 발판 마련

II.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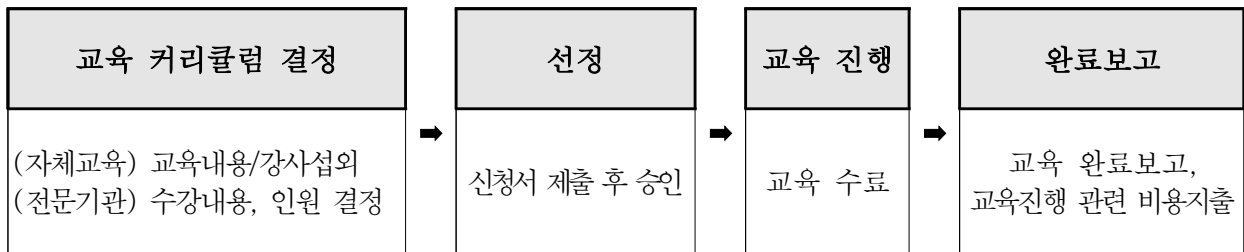
□ 사업목적

-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기업 경쟁력 확보

□ 지원내용

-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마케팅 전략, 콘텐츠 기획, 디지털 마케팅,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트렌드에 관한 마케팅 또는 사업화 교육 지원
- 기업 대표자, 임직원의 자체 또는 전문 교육기관 활용한 교육훈련 지원

□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 시 결과물 증빙

- 전문 교육기관 이용 시 : 교육수수증, 교육훈련결과보고서
- 자체 교육 시 : 강사료/원고료 지출내역서

□ 기대효과

- (체질강화) 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4차 산업 혁명 대비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본 체질 강화 기여

[2] 제품 사업화 분야

I. 제품설계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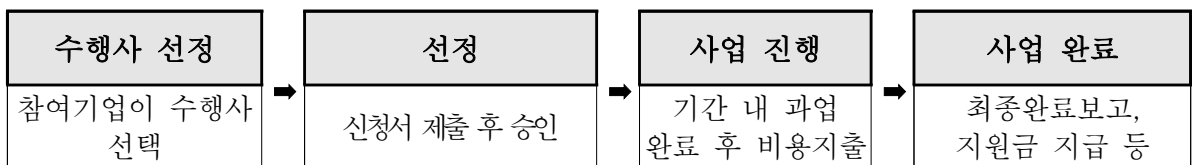
- 아이디어 구상 또는 디자인 시안이 완료된 제품을 기구 및 금형설계 전문가를 통하여 개발함으로써 신제품 라인업 조기 구성

□ 지원내용

- 부가세 제외한 총 소요비용의 70%, 기업당 최대 820만원 이내(전 분야 합산)

세부사업	지원내용
기구 설계	·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어서 워킹 목업을 진행하기 위한 3D데이터 생성 지원
금형 설계	· 제품개발이 완료된 3D 데이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금형 제작에 필요한 금형설계 지원

□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 시 결과물 증빙

- 설계도, 목업/금형 실물(직접 제출 혹은 현장실사)

□ 기대효과

- (원스톱지원) 제품설계를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필요한 제품설계 패키지 지원을 통하여 제품개발에 도움

II. 디자인 개발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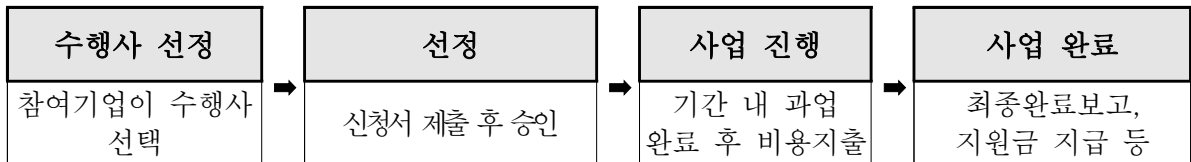
- 디자인개발을 통해 제품 완성도 향상과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를 육성하여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 지원내용

- 부가세 제외한 총 소요비용의 70%, 기업당 최대 820만원 이내(전 분야 합산)

세부사업	지원내용
제품 디자인	· 목업 결과물 제출 또는 확인이 가능한 과제
포장/시각 디자인	· 브랜드디자인, CI, BI 디자인 등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 제외

□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 시 결과물 증빙

- 디자인 파일, 목업 실물(직접 제출 혹은 현장실사)

□ 기대효과

- (기술을 품은 디자인) 아이디어 · 기술의 구체화하여 기술력과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어 시장에서의 차별성 확보
- (소재가 곧 디자인) 단순한 외형에서 벗어나 소재를 새롭게 활용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상품의 고급화에 기여

Ⅲ. 시제품 제작

사업목적

- 우수 제품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에게 시제품(목업, 금형) 제작비 지원을 통하여 신상품 개발 촉진을 통한 조기 사업화 도모

지원분야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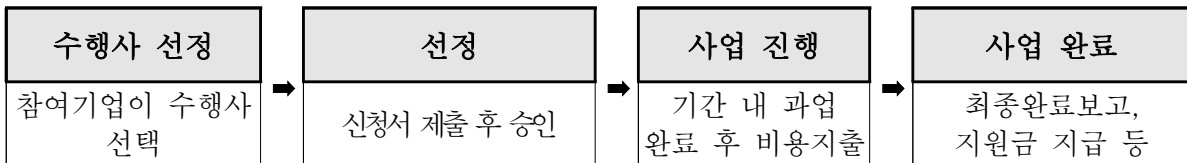
- 부가세 제외한 총 소요비용의 70%, 기업당 최대 820만원 이내(전 분야 합산)

세부사업	지원내용
워킹목업	· 3D DATA를 제품양산 이전에 조립성 체크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한 샘플 제작
금형	· 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단조금형, 압출금형 등

지원금 신청 시 결과물 증빙

- 목업/금형 실물(직접 제출 혹은 현장실사)

지원절차



기대효과

- (개발기간단축/원가절감) 시제품제작업체 및 목업/금형 전문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빠른 시간에 테스트용 샘플 제작 및 비용절감
- (기업경쟁력확보) 우수아이디어의 상품화 완료를 통해 조기 시장 진입을 통해 기업의 매출 향상 기대

[3] 마케팅 분야

I. 전시박람회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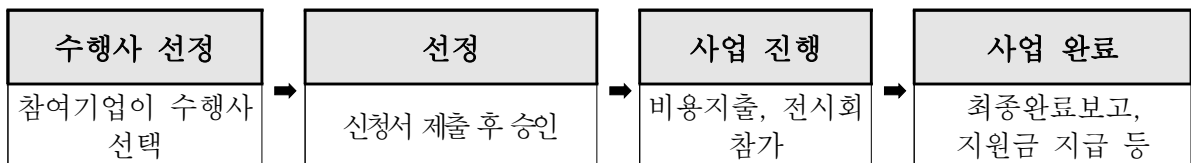
- 제품마케팅 및 판로활성화를 위한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으로 기업성장에 기여

□ 지원내용

- 부가세 제외한 총 소요비용의 70%, 기업당 최대 820만원 이내(전 분야 합산)

항 목	세부내역	첨부서류
주최측 제공	부스료	· 기본부스(조립, 독립)임차료
	기본 장치비	· 전기 · 전화기 렌탈(실비 제외) · LAN(전용선) · 고객관리(RF등록기)사용료 · 압축공기 사용료 · 추가 비품 렌탈 · 기타 전시·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지원 제외 사항	· 광고물 게재(디렉토리 등) · 홍보물 제작, 인쇄(카탈로그 등) · 인건비, 용역서비스(인테리어성 공사비 포함) ·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식비, 주차비, 사무용품, 다과, 교통비, 물류비 등) · 주관기관이 제공치 않는 기타 비용	

□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 시 결과물 증빙

- 배정부스 도면, 전시회/부스 전경(고화질 3매 이상)

□ 기대효과

- (경쟁력강화) 기업 스스로 판로 개척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II. 온라인 마케팅

□ 사업목적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하여 우수한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판로 지원
- 우수한 제품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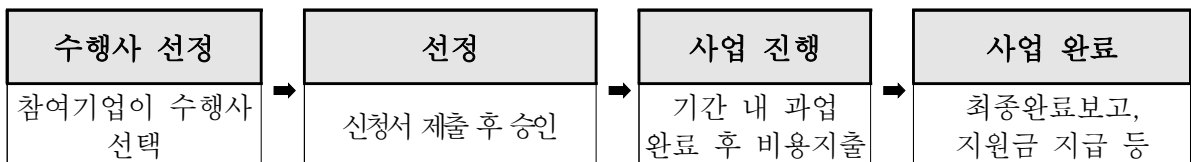
- 부가세 제외한 총 소요비용의 70%, 기업당 최대 820만원 이내(전 분야 합산)

세부사업	지원내용
제품사진 촬영	· 스튜디오에서 촬영 가능한 제품으로 단품 촬영 (3D, VR 포함)
상세페이지 제작	· 오픈마켓, 온라인몰 입점 후 제품 홍보에 필요한 상세페이지 제작
계정 구입	· B2B/B2C 계정 구입/갱신 지원
SNS마케팅	· 온라인 콘텐츠 기획, 제작, 배포 · 마케팅 광고(포스팅, 상위노출 등)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포스트, 유튜브 등

□ 지원금 신청 시 결과물 증빙

- 결과물 사진(고화질), 사이트 접속률 등 자료(해당 시)

□ 지원절차



□ 기대효과

- (홍보컨텐츠확보) 중소기업 자체로 제작하기 어려운 다양한 홍보컨텐츠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판로 확대기여
- (온라인 마케팅)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을 통해 판로 확대

[4] 근무환경개선

I . 편의시설 구축

□ 사업목적

- 여성기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 창출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지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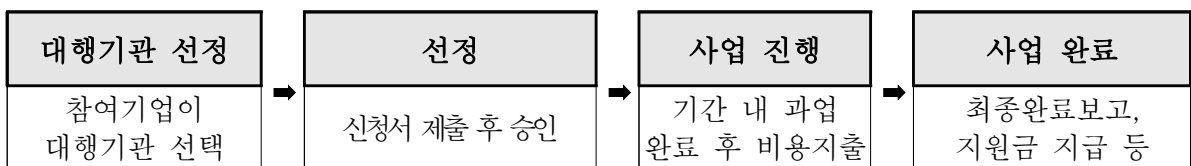
- 부가세 제외한 총 소요비용의 70%, 기업당 최대 820만원 이내(전 분야 합산)

세부사업	지원내용
편의시설 구축	·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구축(수유실, 휴게실 등)

□ 지원금 신청 시 결과물 증빙

- 현장실사

□ 지원절차



□ 기대효과

- (여성근로자 확대) 평택시 여성기업 및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여성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 창출 및 근로자 확대에 기여

별첨2

신청제외 업종(FAQ)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96111	이용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96112	두발미용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96113	피부미용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96119	기타미용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96121	욕탕업	
	56193	치킨 전문점	96122	마사지업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56132	이동 음식점업	96912	가정용세탁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6913	세탁물공급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56219	기타 주점업	96991	예식장업	
	56191	제과점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갬블링 및 베틀업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사업 운영 서식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6년도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사업 추진 계획서**

1 사업 개요

1. 기업 소개 ※ 주생산품, 연혁, 강점 등 기재

-
-
-

2. 재무현황 ※ 2025년 작성이 어려울 시 2024년 작성하고 년도 수정

영업 이익률 (2025년)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	
백만원		백만원		%	
유동비율(2025년)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부채비율(2025년) (부채총액/자본총계) * 100		
유동자산(A)	유동부채(B)	유동비율(A/B)	부채총계(C)	자본총계(D)	부채비율(C/D)
백만원	백만원	%	백만원	백만원	%

3. 기술성 ※ 기술에 대한 차별성 등 기재

-
-
-

2 세부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로 각각 기재

사업1	분야		세부사업		
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개월) ※ 6개월 이내로 산정				
수행사명			수행사연락처		
지원금	총소요비용 (부가세제외)	원	지원금신청액 (부가세제외)	원 (총비용의 70%, 820만원 이내)	
추진 개요					
목적 및 필요성					
주요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순서	세부추진내용	추진 일정		기간(일)
			시작일	완료일	
	1	—	월 일	월 일	일
	2	—	월 일	월 일	일
	3	—	월 일	월 일	일
소요기간(소계)					일
기대효과					

3 사업비 구성 ※ 세부사업별로 각각 기재

1. 단위사업별 사업비 세부내역

세 사 업 명	부 단 위 사 업 명	세 부 내 역 (비 목)	소 요 금 액 (천 원)	구 성 비 (%)	비 고
① 세부사업명(계)					
	① 단위사업명(소계)				
		○			
		○			
	② 단위사업명(소계)				
		○			
		○			
② 세부사업명(계)					
	① 단위사업명(소계)				
		○			
		○			
	② 단위사업명(소계)				
		○			
		○			
총 사업비(합계)				100%	

2026년도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결 과 보 고 서

1. 세부 결과보고 ※ 신청사업수에 따라 표 추가

사업1	분야		세부사업		
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개월)				
수행사명			수행사연락처		
지원금 신청	총소요비용 (부가세제외)	원	지원금신청액 (부가세제외)	원 (총비용의 70%, 천만원 이내)	
주요 추진 내용	순서	세부추진내용	추진 일정		기간(일)
			시작일	완료일	
	1	— —	월 일	월 일	일
	2	— —	월 일	월 일	일
	3	— —	월 일	월 일	일
소요기간(소계)				일	
추진 실적	— —				
결과물 사진	별첨가능		별첨가능		
	사진설명		사진설명		
기대효과					

2. 사업비 집행 실적

2-1. 단위사업별 사업비 집행내역

구분	세부내역(비목)	계 획 (천원)	집 행 (천원)	집행잔액 (천원)	집행률 (%)	비고
1	세부사업명(계)					
	① 단위사업명(소계)					
	○					
	○					
	② 단위사업명(소계)					
	○					
	○					
2	세부사업명(계)					
	① 단위사업명(소계)					
	○					
	○					
	② 단위사업명(소계)					
	○					
	○					
총 사업비(합계)					100%	

* 세부사업 및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

2-1. 사업비 사용 증빙내역

(단위 : 원)

연번*	집행일자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1					
2					
3					
4					
5					
6					
합계					

*집행일자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하며, 각 연번에 따른 증빙자료를 별첨으로 첨부

*사업비 지출증빙(지출품의서류,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사업비 입출내역 등)

2026년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신청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번호			
변경내용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총비용 (VAT 제외)	원	자부담	원	지원금	원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신청 분야, 세부사업 변경은 불가함.				
<p>당사는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p>					
검 토 의 견	* 주) 신청기업에서는 작성하지 않것.	검 토 일			
		검 토 자		(서명)	

2026년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서

신청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번호	
본 사업을 통한 지원성과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매 출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 출	천달러	천달러	천달러	천달러	천달러
종 업 원 수	명	명	명	명	명
※ 전년도 매출액은 표준재무재표와 수치 일치, 2026~2029년은 경영목표/예상치로 기재 ※ 종업원수는 신규채용인원이 아닌 기업 전체인원을 작성					
<p>■ 귀사가 본 사업을 접한 지원정보습득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이메일 ② 홈페이지 ③ 팩스 ④ 직접전화 ⑤ 기타(방문 등)</p> <p>■ [만족도] 귀사는 본 지원사업에 만족하십니까? ① 아주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p> <p>■ [편리성]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지원과정에 대한 편리성은 어떠신가요? ① 아주 불편 ② 불편 ③ 보통 ④ 편리 ⑤ 매우 편리</p> <p>■ [추천의사] 他 기업 추천 및 再 이용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아주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p> <p>■ [친절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인식 및 직원 친절도는? ① 아주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p> <p>■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margin-top: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p>					

2026년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신청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번호			
신청 세부내역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총비용 (VAT 제외)	원	자부담	원	지원금	원
포 기 사 유					
<p>당사는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사업 추진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p>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신청기업명		대표자	
신청과제명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 점					평점
		S	A	B	C	D	
경영진의 추진의지 (20점)	• 신청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의지	20	16	12	8	5	
과제추진 필요성 및 적시성 (30점)	• 신청과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	15	12	9	6	3	
	• 신청과제의 시급성 및 사전 준비성	15	12	9	6	3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30점)	• 신청과제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12	9	6	3	
	•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15	12	9	6	3	
사업성 및 기대효과 (20점)	• 신청과제의 활용가능성(사업화, 시장성 등)	10	8	6	4	2	
	• 신청기업의 성장가능성(매출, 고용 등)	10	8	6	4	2	
우대사항 (최대 5점)	• 최근 5년 이내 평택시 지원사업 선정이력이 없는 경우(5점)						
합 계						점	
사업비 검토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신청 사업비(천원) ⇒ 적정 사업비(천 원)로 산정 표기	신청 사업비			적정 사업비		
		천원			천원		
평가의견							

평가일 : 2026. .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완료평가표

참여기업명		협력기업명	
과 제 명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평점
		S	A	B	C	D	
최종목표 달성도(30점)	최종 결과물이 사업계획서 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30	24	18	12	6	
수행방법의 적절성(20점)	과제개발 과정 및 방법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20	16	12	8	4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20점)	사업비 집행방법 및 증빙자료가 적절한가?	20	16	12	8	4	
사업성과의 적절성(30점)	최종 결과물의 차별성, 권리확보, 매출증대, 고용 창출 등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있는지?	30	24	18	12	6	
감점 (최대 3점)	정당한 사유없이 중간보고서·최종(완료)보고서 및 각종 제출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1건당 △1점)						
합계(100점)						점	
평가결과	<input type="checkbox"/> 성공 <input type="checkbox"/> 실패 <input type="checkbox"/> 보완						
평가의견							

심사일 : 2026. . .

평가위원 소 속 :

성 명 : (서명)